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에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장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후임 선임절차 착수 의무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안 제6조제3항 신설)

법률(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직 중인 원장이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해임·사임·당연퇴직)되거나, 원장의 재선임(제12조제7항) 요건이 되는 기관 평가결과가 임기종료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함

나. 원장의 결격사유(안 제8조 신설)

그 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장의 결격사유를 적용해 왔으나, '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는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연구기관 원장의 해임 사유 정비(안 제8조의2 제2호 삭제)

동 조문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해임사유이나, 제8조(결격사유) 신설시 당연퇴직 사항과 내용상 충돌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라. 예산요구서의 제출기한 현행화(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서 중앙행정관서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5월 31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회→중앙행정관서로 제출하는 시한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의2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원장을 해임하는 경우
2. 원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임기 중에 당연퇴직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 따른 평가가 원장 임기만료일 기준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된 경
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원장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의2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8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제8조의2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해임하는 경우</u> 2. <u>원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u> 3. <u>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임기 중에 당연퇴직하는 경우</u>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평가가 원장 임기만료일 기준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된 경우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8조(원장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장이 될 수 없다.</u>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③ ~ ⑤ (생략) <u><신설></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2. 제8조의2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삭 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u>5월 31일</u>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u>6월 20일</u>을 말한다.	----- --- <u>4월 30일</u>-----. ② ----- ----- <u>5월 20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2 - 4752